

■ 화제의 뉴스 ■

국토부, 아파트 층간소음기준 마련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과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다음달 14일부터 해당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번에 마련된 규칙에서 적용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규칙에서는 층간소음을 위·아래는 물론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 전체를 일컫는다고 정했습니다.

규칙에서 정한 소음 종류는 2가지이며, 뛰는 행위 등으로 벽, 바닥에 충격을 줘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악기·텔레비전 등에서 나는 공기전달 소음입니다.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물소리는 제외되었습니다. 주택 건설 시에 해당 소음 성능이 결정돼 입주자 의지로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리크기기준도 마련됐습니다. 1분 증가소음도는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입니다. 1분 증가소음도는 1분간 발생한 소음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최고소음도는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입니다.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 발생했을 때 측정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이웃끼리 배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기준"이라며 "당사자 간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아파트 등 바닥구조가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바닥 두께를 210mm 이상으로 만들도록 하고 바닥충격음 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도 맞출 수 있게 개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해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을 지난 8일 개소해 층간소음 상담도 함께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Tel. 1661-2642)'를 2012년 3월부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올해 5월부터는 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 [조선비즈 - 국토부, 아파트 층간소음기준 마련\(2014. 4. 10.\)](#)